공정거래제도의 운용강화(案)

-경제기획원-

Ⅰ. 수정 6차계획 정책기조와 公正去來制度

1. 수정 6차계획의 정책기조

- 당초 6차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90년대초 선진경제진입을 추구
- 금번 수정계획은 경제선진화를 추구하되 「量보다도 質」을 중시하고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自律·公正·均衡」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의 발전에 주안을 둠.

2. 公正去來制度의 운용 강화

- 「自律·公正·均衡」속에서의 경제선진화는 민간의 창의·자율·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暢達에 의해 추구함이 최선
-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여를 대폭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그 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첫째,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축소한다는 것이 양적인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정부가 부득이 행하는 규제도 공정거래제도를 준수하면서 최소한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의 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를 공정거래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함.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추진

둘째, 민간기업의 활동이 「公正競爭」Rule下에서 원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력집중현상이 「公正競爭」을 해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는 물론 불합리한 집중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강화해야 함.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세째, 경제각분야는 각산업의 특징하에서 정부·사업자단체·민간기업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각분야에 고유한 공정거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사업자단체나 민간기업이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下都給 공정화시책의 추진강화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네째,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이 행정의존체질을 바꾸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시정, 下都給거래공정화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지위회복,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경쟁촉진을 위한 노력 경주
- 그러나 아직도 경쟁제한 법령이나 행정관행이 적지 않아 공정거래제도 발전이 제약받고 있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분쟁사건등에 치중되어 구조적인 경쟁여건 조성에는 미흡
- 특히 흑자경제의 정착화와 함께 국제협력경제를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자체가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됨이 시급
- 국내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 완화되고,
둘째,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사업자단체의 기능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카르텔등 업계관행을 통한 경쟁제한적인 사업자의 행동이 지양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1. 주요산업에 대한 競爭促進施策의 추진

가.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완화

(1)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규제완화의 필요성

- 정부의 지속적인 자율화시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활동에 있어 정부규제제도등 각종 형태의 경쟁제한요인이 상존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구속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

○ 실정법은 없으나 합리화목적등을 이유로 가격·수량등에 대한 행정지도

- 자유기업체제의 발전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규제제도의 정비와 산업조직상의 경쟁제한요인 또는 관행의 제거가 선결되어야 함.

(2) 추진계획

(가) 종합적인 산업조직 실태조사

- 주요산업에 대해 경쟁촉진 관점에서 학계, 연구기관의 참여하에 단계적으로 산업조직 실태조사 실시
〈조사 대상업종 선정기준〉

○ 국민경제상 비중이 큰 업종으로서 경쟁제한요인

〈法令에 의한 競爭制限의 類型〉

(業種數)

참입규제	가격규제	설비규제	수량규제	其他營業活動				
				지역제한	개별사업의 승인	형식품질 승인	사업개선 명령	기타
84	26	10	15	8	20	41	20	49

註 : 89개 업종(54개 법률)에 대한 사례조사(資料 1 參考)

이 큰 업종
○ 法令, 행정지도등 행정관행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
○ 사업자단체(政府委託業務 수행,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강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 산업조직 측면에서 경쟁제한요인이 크거나 업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업종

〈주요검토사항 例示〉

○ 法令·행정처분 및 행정관행
  • 규제제도의 도입당시 상황과 현재 여건의 비교검토
  • 규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비용과 규제효과의 비교 검토
  • 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문제점과 효율 또는 능률 증대면과의 비교 검토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 단체별로 실사, 경쟁제한행위를 유형화한 후 필요성 여부검토
○ 산업조직 측면
  • 산업조직, 원료조달, 유통구조, 시장행동 및 성과 등을 종합검토

㈏ 실태조사결과를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완화와 연결하는 방안강구

– 산업조직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차원에서의 개선방안 작성
○ 업계, 학계, 관련부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방향 정립
○ 행정관행인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위반인 경우 법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 주무부처 스스로 소관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현재 주무부처가 자율화계획을 추진중인 業種例 : 비료, 에너지 관련산업, 농기계, 자동차운수업 등
○ 산업조직실태결과가 자율화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

㈐ 경쟁제한적인 신규법령제정 및 행정처분등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전협의제도 운용강화

– 법령 및 이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의해 사업자(단체포함)가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법령 및 행정명령 자체를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공정거래법 第51條)
– 法 및 시행령은 사전 협의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미흡
  → 대부분의 정부규제가 행정명령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으므로 결국 사전협의 법정신 실현 곤란
– 각부처의 법령을 조사하여 경쟁제한사항이 있는 법령조문을 대통령령 또는 총리훈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각부처의 사전협의대상을 명확히 함.
–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앞으로의 산업별 경쟁촉진시책에 의한 정부규제의 완화를 보다 철저히 실현가능
○ 새로운 경쟁제한 법령·처분의 증가억제
○ 협의의무를 未履行한 기존의 경쟁제한법령 처분의 개선촉구

〈참고〉

정부규제완화에 대한 反對論理의 타당성 여부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논리	妥 當 性 여 부
〈製品·서비스의 「質」저하〉 규제완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製品·서비스의 「質」저하, 안전성 결여등 소비자 피해발생	–제품·서비스의 「質」자체가 顧客확보를 위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은 가격하락은 물론 「質」도 제고시킴 –안전성은 「質」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촉진으로 안전성은 오히려 제고될 수 있음.
〈기업활동의 高收益事業部門 집중〉 가격결정이 자율화되면 수요는 많되 단위당 공급비용이 적게 드는 시장에 기업의 영업활동이 집중되고 반대로 수요는 적고, 단위당 공급비용이 많이 드는 低收益부문에는 공급이 중단될 것임.	–단기적으로는 공급상의 한계로 수급상 不均衡 부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신축적이고 기업인의 창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수요와 공급이 시장전체에 알맞은 가격체계내에서 조화를 이룰 것임.
〈獨寡占化 및 중소기업의 도태〉 掠奪的 시장경쟁이 유발되어 생산코스트面에서 유리한 대기	–규제완화산업이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정기업이 타기업에 비해 절대적인 코스트면의 우위를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논리	妥 當 性 여 부
업의 獨寡占化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존립 및 신규參入이 곤란하게 됨.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또한 규제완화는 산업내 특수분야에 대한 特化·전문화 및 신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신규참여를 촉진
	-獨寡占大企業의 가격조작등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능
〈실업증가 및 賃金·作業조건 악화〉 경쟁심화로 도산업체가 발생하면 실업이 증가할 것이며,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비절감노력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고 작업조건이 악화될 것임.	-초기에 기존의 일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완화에 따라 많은 업체가 신규參入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고용은 증가하게 됨. -경비절감노력으로 인건비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人當 生産性增加에 따른 것임.

나. 事業者團體 기능의 합리화

(1) 사업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 1988. 4 현재 總 977개 단체가 공정거래법에 의거 설립 신고
- 사업자단체는 정보교환, 기술교통의 촉진등 順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 고유기능이 없는 단체의 난립등 단체조직의 합리성 결여

○ 정부위탁업무의 불합리한 집행으로 기업활동의 비능률 초래

○ 경쟁제한 및 不公正去來行爲로 기업간 공정경쟁 저해

- 公正去來制度 시행이후 가격의 공동결정, 신규참입 제한등 경쟁제한내용의 定款을 개선시키는 한편 1987. 12월까지 91件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
- 1985년부터 사업자단체의 기능합리화를 추진하여 단체조직의 체계화, 가입·탈퇴의 자율화 및 회비징수제도의 개선등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부위탁업무개선은 추진실적이 미흡

〈事業者團體의 기능합리화 추진실적〉

○ 214개단체에 대한 297건의 기능합리화추진

- 유사단체의 통·폐합등 단체조직의 체계화 50건
- 가입강제의 배제등 가입·탈퇴의 자율성제고 45건
- 특별회비 징수억제, 會費부과기준의 합리화등 회비징수제도개선 151건
- 회원사에 대한 特定商品구입강제등 不公正去來행위시정 39건
- 수출입추천 제도개선등 정부위탁업무 개선 12건

○ 事業者團體활동지침의 제정·홍보

(2) 추진계획

㈎ 事業者團體의 정부위탁업무 개선

- 위탁업무의 존속필요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 일부 수출입추천업무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탁업무 존속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계속 수행하는 경우

○ 단체가 위탁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편의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속 존치시키는 경우

- 위탁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처리기간, 添附書類등 절차의 번잡, 수수료 과다징수등으로 불필요한 Red-Tape나 업무부담을 주는 경우

○ 위탁업무 수행범위를 일탈하거나 단체가입, 회비징수 및 각종 각출금 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 公正去來制度의 보완 및 운영강화

-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보완·발전
- 常習 위반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관행의 적극 시정

○ 사업자단체의 활동지침 운영상황점검등 사전홍보활동 강화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정

○ 公益上 필요하거나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쟁제한행

위는 사전에 인가를 받아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유도

다. 부당한 共同行爲에 대한 감시강화

(1) 共同行爲시정실적 및 평가

- 장기화된 공동행위의 철폐 등 업계의 경쟁제한적인 거래행태의 개선에 노력
○ 시멘트製造業者들의 카르텔 해체(87. 6)
○ 新聞業의 카르텔 해체(88. 2)
○ 제도시행이후 87. 12까지 家電製品業界(87. 4), 製紙業界(87. 9), 精油業界(88. 4)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8건을 적발하여 시정
- 그러나 종래의 보호·지원위주시책과 업계관행으로 기업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높으나 적발이 용이치 않음.
○ 중소사업자등에서는 공동행위가 업계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많음.
- 또한 관계부처의 경쟁제한적 행정명령 또는 행정지도에 근거한 공동행위가 많아 제도운영에 애로

〈참고〉 공동행위 감시제도의 개선내용(86. 12. 法 개정)

○ 종전 登錄制를 인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리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신설 및 공동행위의 추정근거 마련
○ 공동행위 인가시 그 내용에 대한 公示制度를 도입하여 공동행위 인가의 공정성 확보
○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등 공동행위 인정범위확대 및 인가요건의 구체화

(2) 추진계획

- 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전 예방
○ 法違反 여부등에 대한 사전 상담기능의 활성화
○ 공동행위의 폐해 및 공정거래법 홍보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 法 第51條의 운영강화로 정부주도 공동행위의 사전 예방
-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시장지배력이 크고 製品差別化가 곤란한 품목,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등을 중점감시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감시
○ 과거 행정지도하에서 공동행위가 관행화된 업종에 대한 職權조사 확대
○ 조사결과 明示的 증거가 없더라도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등을 적극 활용
-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 과징금 賦課基準의 구체화 및 부과대상 확대를 통한 과징금제도 운용 강화
○ 시정조치후 업체별 製品販賣價格動向, 재고수준등을 일정기간 점검
○ 빈번한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해 벌칙적용 강화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신축적 인정
○ 일시적 불황산업등에 대한 공동행위의 탄력적 인가

2. 經濟力集中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30大 기업집단의 부가가치는 75~83년간 국민총생산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성장

	國民總生産(A)	30大企業集團(B)	B / A
○75~83 연평균성장률	24.6%	42.7%	1.7배

- 이에 따라 30大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
- 과거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기업확장과 富의 편중 및 세습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 고조
○ 과거 정부의 不實企業 인수종용, 금융특혜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 제기
○ 소수 특정인에 의한 대기업 지배, 富의 편중으로 계층간 갈등 야기

〈30大 企業集團의 경제력 추이〉

國民총생산점유율		鑛工業部門 출하액점유율	
1975	1983	1977	1985
6.7%	19.8%	32.0%	40.2%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추진실적

- 公正去來法上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86. 12 法改正)및 추진

제 도 내 용	추 진 실 적
가. 대규모企業集團지정 -계열회사의 資産合計額이 4千億원이상인 기업집단	1987 1988 기업집단(個) 32 40 계열회사(社) 509 609
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직접상호출자금지	-法 시행당시(87.4.1) 상호출자금액 확정 통보 : 경과기간 3년인정 ○139件 768억원(작은 금액기준)~3,989억원(큰 금액기준)
다.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他會社출자금지	-法 시행당시(87.4.1)出資限度超過金額 확정 통보 : 경과기간 5년인정 ○154개회사 12,943억원
라.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法 시행당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파악·통보
마. 持株會社 설립금지 -他會社 지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설립금지	-法 시행당시 경과기간(1年) 인정 持株會社(7개)의 정리 유도 ○5개 持株會社 旣 해체(흡수합병, 등)

- 대규모기업집단 特有의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하여 경제력집중을 시장행태면에서 규제(86. 7 不公正去來行爲지정고시 개정)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금지

○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不當廉賣 또는 不當高價매입하는 행위 금지

○ 자기의 거래상대방에게 계열회사의 상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금융부문에 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추진강화(87. 1)

○ 금융·보험회사의 資産運用準則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금융·보험회사가 과다하게 계열회사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

-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5~10%
-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한도: 총자산의 3~5%

○ 30大 기업군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를 일정수준이하로 유지(87. 10末 수준 : 29%)토록하는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3) 추진계획

-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出資總額제한 및 상호출자금지제도의 효율적 추진

○ 출자한도 초과금액 및 상호출자금액의 법정기간내 해소를 위한 년도별 계획 수립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기업확장억제를 위한 交替出資허용기준 발전

○ 脫法的인 상호출자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사업에 대한 參入자격이 자본금, 시설규모등 주로 量的인 기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내의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는 각종 제도를 조사하여 시정 유도

-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이 집단으로서의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장등 경영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발전

- 외국기업과의 경쟁차원에서 볼 때,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대형화 등에 힘입어 우리의 기업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수직 또는 수평의 기업결합을 강력히 규제토록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보완 발전

- 경제력집중 현상은 각종 경제시책과 기업행태의 종합적인 결과이므로 경제력집중현상의 효과적인 억

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산업·금융·조세등 연관시책의 齊合成을 제고

○ 금융·세제·關稅제도개편시 경제력집중 억제관점에서 개선 추진

○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계획과 與信管理제도운용의 연계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기업공개 및 주식분산을 강력히 유도

○ 「富」와 「企業集團」의 세습화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 및 종합과세제도의 운용 강화

나. 獨寡占事業者의 남용행위 감시강화

(1) 독과점품목에 대한 감시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 매년 독과점사업자를 지정·고시하여 이들의 남용행위 감시
- 시장확대와 參入제한의 완화등으로 개별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도는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독과점도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높음.

(구성비, %)

	年度	集中型			競爭型	計
			上位3社 70%이상	上位3社 50~70%		
품목수 기준	1981	87.8	73.4	14.4	12.2	100.0
	1985	85.1	69.5	15.6	14.9	100.0
출하액 기준	1981	73.9	58.5	15.4	26.1	100.0
	1985	69.9	53.2	16.7	30.1	100.0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한 시정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내용은 一般不公正去來行爲가 대부분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시정실적〉

(件)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計
남용행위	-	-	2	6	2	1	5	16
불공정거래행위	10	8	14	24	31	31	25	143

(2) 추진계획

(가) 獨寡占品目의 경쟁여건 개선

- 정부의 지원 내지 개입은 事後的, 한시적으로 하고 정보제공기능의 확대에 주력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의 점진적 축소로 시장기능의 활성화 촉진
- 해외경쟁력의 효율적 도입

○ 독과점지위를 남용하였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경쟁촉진적 低率關稅체계 확립

○ 수입자유화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인 시정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감시제도 발전

- 남용행위 類型의 보완·발전과 감시강화

○ 독과점사업자의 남용행위유형의 세부 발전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행하는 경우 남용행위로 엄격히 규제

-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 지표작성·공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현황〉

(個, 社)

	1981		1984		1986		1988	
	품목수	기업수	품목수	기업수	품목수	기업수	품목수	기업수
輕工業	15	39	23	63	26	77	30	79
重化學工業	27	63	48	116	74	189	91	206
서비스업	-	-	-	-	-	-	1	1
計	42	102	71	179	100	266	122	286

3. 下都給去來공정화시책의 추진 강화

가. 下都給去來공정화시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 하도급거래에서 原事業者(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受給事業者(중소기업)의 경쟁력 보강에 노력하여 왔음.

○ 下都給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85. 4)

○ 사업자단체별 下都給紛爭調停협의회(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등 5개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紛爭調停 유도

○ 造船, 종합상사등 업종별 직권실태조사를 통한 업계 관행 개선 유도

〈下都給紛爭事件 처리실적〉

(件)

	1983	1984	1985	1986	1987	計
시정실적	4	85	140	153	141	523
자율조정	–	–	0	46	49	105

– 下都給法의 운용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상당히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受給事業者인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상 애로사항이 많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서면계약의 기피로 분쟁내용 파악곤란

○ 原事業者의 僞裝直營행위등 탈법행위

○ 原事業者의 보복조치우려에 따른 受給사업자의 신고기피현상

나. 추진계획

– 下都給관련제도의 개선

○ 하도급 분쟁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서식의 보급 확대

○ 금융기관의 「지로」제도 발전추이를 고려하여 發注者 또는 原事業者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은행특별계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등 대금지급제도 개선

○ 低價下都給심사제의 운용 강화

– 업종별 下都給公正化지침의 작성 확대로 규제기준의 명확화 및 업계의 자율적 시정유도

– 不公正下都給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강화

○ 申告受給企業에 대한 보복조치 강력규제 및 職權조사대상 확대

○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重點監視對象業種 및 유형선정을 위한 광범위한 서면조사 실시

○ 不公正下都給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위반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원貨切上에 따른 부담의 부당한 轉嫁를 방지

○ 國際收支黑字基調에 따라 원貨의 切上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換差損, 수출감소등의 부담을 原事業者가 受給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큼.

○ 원貨切上관련 제조하도급의 공정거래기준을 수립·실시하여 중소하도급기업을 보호

4.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가. 공공사업자의 不公正거래행위 적극 시정

– 정부투자기관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유지

– 공공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87년중 電氣通信公社등 5개의 공공사업자에 대해 실시)로 불공정거래행위 적극시정

〈例 示〉

○ 공사완료후 남은 社給자재를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로 구입케 하고 同代金을 계약금에서 감액

○ 물품의 판매시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운송업체를 지정上記 조사를 토대로 공공사업자에 대한 公正去來法 운용지침 보완

나. 백화점업등 대형유통업체의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시정

–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빈발

〈例 示〉

○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감액

○ 非季節商品, 판매부진등의 이유로 납품업자에 반품

○ 정기바겐세일外에 대축제, 특별판매등 기획행사 명

목으로 할인특매기간(現行告示上 연간 90일이내)을 초과

- 현재까지 적발된 不公正去來行爲類型을 토대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改正

다. 流通계열화 특수판매제도에 대한 公正去來法 적용방안 수립

- 최근 제조업자가 유통경로를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流通계열화현상과 통신, 할부판매등 특수판매제도가 진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쟁제한사례가 증가하고 제조업자와 상인간·소비자간의 마찰과 분쟁증가
- 유통경로단축, 상품정보 신속전달등 유통계열화 및 특수판매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유통계열화 및 특수판매제도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類型과 이의 부당성 심사기준을 작성
- ○ 專屬的 대리점제도를 운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유통조직 및 유통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유통계열화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지침 작성

라. 외국사업자의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감시 강화

- 수입자유화등 대외개방확대 과정에서 외국사업자의 不公正去來行爲 및 경쟁제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국내사업자 배제목적의 덤핑 판매행위 규제
- ○ 국내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덤핑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시정(덤핑 關稅제도와 連繫運營방안 강구)
- 다국적기업등 국내진출 외국사업자의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지정·감시
- 외국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방안 마련

마. 특수업종의 去來行態公正化 추진

- 소비생활의 다양화 및 소비자의 대사업자 정보의존심화현상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적 마찰이 특히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공정한 경쟁의 확보차원에서 해당업종에 대한 개별적인 공정경쟁기준을 수립 실시

○ 정부규제완화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증가등으로 다수사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飛火가능하므로 이를 사전 예방

○ 公正去來法 第15條에 의거 각 업종별로 特殊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

- 告示(현재는 「백화점업등 대형유통업에 대한 特殊不公正去來行爲」만을 지정)

- 不動産業에서의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조사·발굴

○ 坪數, 위치, 가격등 분양·임대조건에 관한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

○ 賃借人과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 관광운수업에서의 特殊불공정거래행위 조사·발굴

○ 운송조건등에 불구하고 운송후 부당한 추가요금 요청

○ 해외관광여행등에 대한 허위·과장표시광고

- 新聞·雜誌業에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조사·발굴

○ 거래상대방 또는 지역에 따라 차등가격 적용

○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문부수를 초과하여 강제 공급

- 자연식품업에서의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조사·발굴

○ 제조방법, 첨가물의 종류, 내용량등에 관한 허위·과장표시광고

○ 판촉활동을 위한 과다한 경품제공행위

바. 表示·廣告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강화

- 不當表示 및 허위·과장광고는 경쟁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 부당·허위·과장의 판단기준에 대해 내부지침을 제정 운용(表示광고에 관한 公正去來指針 82. 12)

○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가 점차 지능화·다양화

- 식품위생법등 他法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광고를 규제함으로써 동일 위반사례에 대한 二重的 규제 초래
- 축적된 행정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내부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우리 현실에 맞는 고시 제정

〈주요내용〉

○ 비교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價格·品質·性能·效率등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 외국어로만 표시하여 국산제품임을 판별하기 곤란

하게 하는 등 원산지 · 제조자에 관한 부당표시 · 광고

○ 실내용물에 비하여 과대하게 포장하는 등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不當表示 · 광고

○ 일부품질에 의해 受賞한 것을 전체품질에 의해 수상한 것으로 광고하는 등 추천, 수상등에 관한 부당표시 · 광고

– 자율적인 공정경쟁규약 실시업종의 확대유도 및 기실시업종에 대한 규약준수 유도

5. 公正去來制度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

가. 교육 · 홍보강화의 필요성

– 不知不識間에 기업가나 소비자에게 잠재해 있는 행정의존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意識의 전환이 필요
→ 사고발생시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난에 따라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경향

– 公正去來制度는 귀찮은 것이라던가 정부규제의 하나라고 인식되는 것을 불식하고,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스스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홍보함이 필요

– 또한 경제의 급변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콘센서스를 그때 그때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자등 국민전체의 참여를 유도함이 중요

나. 推進計劃

– 학계와 連繫로 학술토론회 개최(年 2회)

– 유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연수회 개최

– 公正去來制度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구회나 간담회를 결성 · 운영

○ 지방상공인 및 유력인사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전국적 시야에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도모

○ 유통, 下都給, 산업조직문제등 특정분야에 관한 學界 · 업계인사를 포함하는 연구회 구성 · 운영

–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상담기능 확대

– 「公正去來」誌의 발간 · 보급

〈자료 1〉 法令및 정부업무위탁등에 의한 업종별 경쟁제한 유형 현황

해당업종	관련법령	法令에 의한 정부규제 1)									정부업무위탁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參入규제 (허가 · 등록 · 신고)	가격규제 인가 · 지정 · 신고)	설비 규제	수량규제 (수급조절명령)	기타 영업활동 규제					수출입 추천	3) 쿼터 배정	검사 · 지정 · 확인	신고 · 추천	4) 지도 · 교육 기타
						지역 제한	개별사업 승인(品目許可)	형식 · 품질	사업 개선 명령	2) 기 타					
1. 農業機械製造業	農業機械化促進法		○		○			○		○	○				
2.農藥製造業	農藥管理法	○			○		○	○	○	○					○
3.農藥原劑業	農藥管理法	○							○						
4.農藥販賣業	農藥管理法	○								○					
5.飼料製造業	飼料管理法	○	○	○				○		○	○				
6.肥料製造業	肥料管理法	○	○		○		○	○		○		○			
7.肥料販賣業	肥料管理法	○			○					○					
8.酒類原料製造業	酒 稅 法	○	○	○			○	○		○					○
9.酒 造 業	酒 稅 法	○	○	○		○		○		○					○
10.穀穀加工業	穀穀管理法	○	○	○				○		○	○				
11.穀穀販賣場	穀穀管理法	○			○					○					
12.機械鹽製造業	鹽管理法	○			○					○					○
13.製絲 · 絹紡業	蠶 業 法	○	○	○							○				○

해당업종	관련법령	法令에 의한 정부규제"									정부업무위탁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參入규제 (허가·등록·신고)	가격규제 (인가·지정·신고)	설비규제	수량규제 (수급조절명령)	기타 영업활동 규제					·수출입 추천	3) 쿼터배정	검사·지정·확인	신고·추천	4) 지도·교육기타
						지역제한	개별사업승인(品目許可)	형식·품질	사업개선명령	2) 기타					
14.人蔘製造業	人蔘事業法	○					○	○			○		○		
15.石油精製業	石油事業法	○	○	○	○	○		○		○	○	○			
16.石油販賣業	石油事業法	○	○		○			○		○			○	○	
17.石油輸出入業	石油事業法	○	○		○			○			○				
18.石炭加工業	石炭産業法	○	○		○	○		○		○					○
19.自動車製造業	自動車管理法, 環境保全法							○			○				
20.自動車運送事業	自動車運輸事業法	○	○	○		○			○	○				○	
21.自動車運輸斡旋事業	自動車運輸事業法	○	○						○	○				○	
22.醫藥品製造業	藥事法	○					○	○		○	○			○	
23.醫藥部外品製造業	藥事法	○					○	○		○	○			○	
24.向精神性醫藥品製造業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	○			○			○	
25.醫療用具製造業	藥事法	○					○	○		○	○				
26.衛星用品製造業	藥事法	○					○	○		○					
27.化粧品製造業	藥事法	○						○			○				
28.醫藥品販賣業	藥事法	○								○					○
29.醫藥品輸出入業	藥事法	○								○	○		○		
30.醫療用具 및 衛生用品販賣業	藥事法	○													
31.索道·軌道事業	索道·軌道事業法	○	○	○			○		○	○					
32.倉庫業	倉庫業法, 農業倉庫業法	○	○						○	○					
33.電氣通信工事業	電氣通信工事業法	○								○			○	○	○
34.電氣用品製造業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	○		○				
35.熱使用機資材製造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							
36.熱使用機資材施工造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					○
37.熱供給事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		○	○					
38.高壓가스容器·	高壓가스	○						○							

해당업종	관련법령	法令에의한정부규제"									정부업무위탁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參入규제(허가·등록·신고)	가격규제 인가·지정·신고)	설비규제	수량규제(수급조절명령)	기타 영업활동 규제					수출입추천	3) 쿼터배정	검사·지정·확인	신고·추천	4) 지도·교육기타
						지역제한	개별사업승인(品目許可)	형식·품질	사업개선명령	2) 기타					
冷凍機·特定設備製造業	安全管理法														
39.高壓가스製造業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				○							
40.가스用品製造業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						○			○				
41.消防用機械·機具製造業	消防法	○						○							
42.消化藥劑·防染塗料·防染液·防火藥品製造業	消防法	○						○							
43.銃砲·刀劍·火藥類製造業	銃砲·刀劍·火藥類團束法	○			○			○							
44.計量器製造業	計量法	○						○			○				
45.檢査用機械製造業	環境衛生法							○							
46.食品製造·加工業	食品衛生法	○					○	○		○	○				○
47.食品類·容器·包裝類製造業	食品衛生法	○						○		○	○	○			
48.添加物製造業	食品衛生法	○					○	○		○					
49.食品販賣業	食品衛生法	○													
50.毒劇物製造業	毒物및 劇物에 관한法律	○						○	○	○					
51.貿易業	對外貿易業	○			○		○		○	○			○		
52.農水産物收集業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53.農水産物輸出業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				
54.醫療業	醫療法	○	○										○		○
55.技術用役業	技術用役育成法	○	○							○					
56.重機製作業	重機管理法	○						○					○		
57.重機貸與業	重機管理法	○	○										○		
58.重機整備業	重機管理法	○											○		
59.自動車貨與事業	自動車運輸事業法	○	○						○	○					
60.自動車管理事業	自動車管理法	○	○						○						
61.自動車停留場事業	自動車停留場業	○	○	○					○	○					

해당업종	관련법령	法令에 의한 정부규제[1]									정부업무위탁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參入규제 (허가·등록·신고)	가격규제 (인가·지정·신고)	설비규제	수량규제 (수급조절명령)	기타 영업활동 규제					수출입 추천	3) 쿼터 배정	검사·지정·확인	신고·추천	4) 지도·교육 기타
						지역제한	개별사업승인(品目許可)	형식·품질	사업개선명령	2) 기타					
62.鐵道小運送業	鐵道小運送業法	○	○			○			○	○					
63.航空機製造業	航空工業振興法	○						○							
64.航空運輸業	航空法	○	○			○			○	○					
65.造船業	漁船法, 船舶安全法							○			○	○			
66.海上旅客運送業	海運業法, 海運産業育成法	○				○			○				○		○
67.海上貨物運送業	海運業法,海運産業育成法	○	○				○								
68.船舶關聯서어비스業	海運業法,海運産業育成法	○								○					
69.洩船業	港湾法	○	○				○								
70.港湾運送事業	港湾運送事業法	○	○						○	○					
71.港湾運送附帶事業	港湾運送事業法	○													
72.海外港湾事業	港湾運送事業法	○													
73.觀光事業	觀光振興法	○							○	○		○	○		
74.種畜業	畜産法	○			○			○	○		○				
75.孵化業	畜産法	○									○				
76.畜産業	畜産法	○			○						○				
77.屠畜業	畜産物衛生處理法	○			○			○							
78.林業	草地法					○	○			○	○				
79.建築,建設,土木業	建設業法	○						○		○					○
80.住宅建設業	住宅建設促進法	○					○			○					
81.海外建設業	海外建設促進法	○					○			○		○	○		
82.理容業·美容業	公衆衛生法	○								○					○
83.遊技場業	公衆衛生法	○								○					○
84.宿泊業, 沐浴場業	公衆衛生法	○								○					○
85.水泳場業	公衆衛生法	○								○					
86.장난감製造業	公衆衛生法	○					○	○	○		○				

해당업종	관련법령	法令에 의한 정부규제[1]									정부업무위탁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參入규제 (허가·등록·신고)	가격규제 (인가·지정·신고)	설비규제	수량규제 (수급조절명령)	기타 영업활동 규제					수출입추천	3) 쿼터배정	검사·지정·확인	신고추천	4) 지도·교육기타
						지역제한	개별사업승인(品目許可)	형식·품질	사업개선명령	2) 기타					
87.汚物處理業	汚物淸掃業法	○								○					
88.淨化槽設計施工業	汚染淸掃業法	○													
89.糞尿淨化槽製造業	廢棄物管理法	○						○							

註 : 1) 全國經濟人聯合會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규제만을 포함한 것이며, 비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例 : 공해방지, 작업안전, 에너지管理, 교육훈련, 검사, 보고, 노무·재무등에 관련된 규제)는 제외한 것임.

2) 생산계획의 조정, 販促活動의 제한, 생산(판매)방식의 제한, 원료구입·관리의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3) 국제입찰 참가조정, 수출자율규제, 할당관세추천 포함

4) 홍보, 조사, 기금관리, 원료배정 포함

〈資料 2〉 違反事件시정 및 신고·인가(등록) 업무의 처리실적

가. 違反事件 시정실적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計
市場支配的事業者남용행위	–	–	2	6	2	1	5	16
企業결합	23	45	22	42	25	22	32	211
事業者間공동행위	–	–	–	7	10	4	7	28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	5	9	11	5	8	37	16	91
불공정거래행위	37	37	149	130	278	417	381	1,429
(下都給)	(1)	(-)	(4)	(85)	(140)	(153)	(141)	(524)
(시장지배적사업자)	(10)	(8)	(14)	(24)	(31)	(31)	(25)	(143)
국제계약	78	169	212	244	234	270	241	1,448
計	143	260	396	434	557	751	682	3,223

나. 신고·인가(登錄) 및 상담실적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計
申告	기업결합	148	288	210	231	173	204	216	1,470
	사업자단체설립	595	181	62	15	54	30	58	995
	국제계약	188	438	516	736	750	719	865	4,212
	計	931	907	788	982	977	953	1,139	6,677
認可(登錄)	사업자간공동행위	4	1	1	3	1	1	1	12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	180	11	3	5	2	36	1	238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4	3	2	–	–	–	10
	計	185	16	7	10	3	37	2	260
法令협의		18	20	39	62	57	54	51	301
질의상담		58	33	316	342	394	1,294	1,741	4,178
計		1,192	976	1,150	1,396	1,431	2,338	2,933	11,416

〈資料 3〉 法 制 現 況

가. 法律·施行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및 시행령(81.4시행, 日本은 1947시행)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법률」 및 시행령(85.4시행, 日本은 1956시행)

나. 告 示

- 매년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88. 122개품목 286사업자)
- 企業結合의 신고요령(83.1. 제정, 87.5. 개정)
- 外國人投資事業 영위를 위한 持株會社 설립(轉換) 승인신청요령(87. 5)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87. 10)
-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요령(87. 10)
-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대상상품 지정신청과 再販賣價格維持 계약체결신고요령(87. 5)
- 去來拒絶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81. 7 제정, 86. 7 개정)
- 國際契約上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범위 및 기준(81. 7 제정, 87. 9 개정)
- 景品類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82. 3제정, 85.6 개정)
- 유통업계의 割引特別販賣行爲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83. 7)
- 百貨店業界의 特殊不公正去來행위지정(85. 10)
- 公正去來委員會 사건심결절차에 관한 규정(81. 5)

다. 운용기준 또는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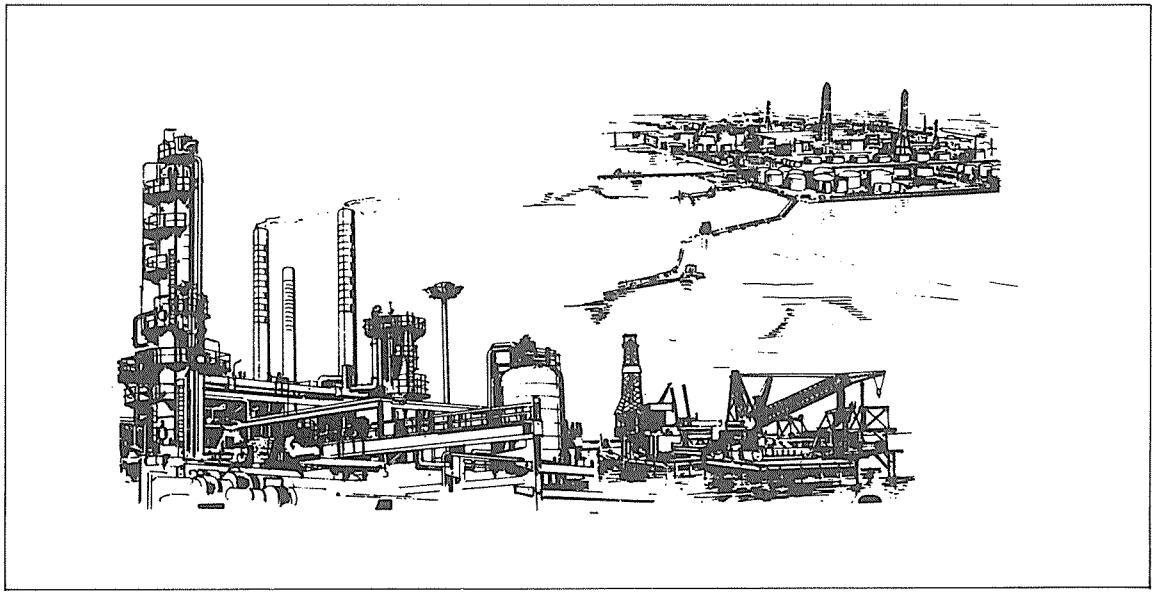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82. 12 제정, 87. 6 개정)
-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81. 9)
- 持株會社의 범위에 관한 심사요령(87. 4)
- 사업자단체 활동지침(86. 6)
-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82. 12)
-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운용지침(86. 6)
- 建設下都給 공정화지침(87. 9)